

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

제정	1994. 4. 9	조례 제1358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2004. 2. 27	조례 제 50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59호
	2006. 10. 13	조례 제 833호
일부개정	2014. 5. 2	조례 제1362호
일부개정	2017. 9. 29	조례 제169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.

〈개정 2005. 10. 5, 2014. 5. 2, 2017. 9. 29〉

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감독·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〈신설 2014. 5. 2〉

[제목개정 2014. 5. 2]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삭제 〈2014. 5. 2〉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6. 3. 1〉

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4. 2. 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59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0. 13 조례 제8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5. 2 조례 제13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9. 29 조례 제16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삭제 <2014. 5. 2>